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. 5. 8 선고 2024가단236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2023. 7. 2.부터 위 제1의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
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전호재

별지